

협력업체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히로세코리아(주) (이하 '當社')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력업체 등록기준

1) 신규업체 등록 기준

-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 當社の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요청부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등록이 필요한 경우等

2) 협력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日 以前에 홈페이지에 15日 以上 공개한다.

3)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日 以前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4)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5) 當社の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未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以上の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7)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3. 협력업체 등록 절차

- 1) 신규업체 등록의뢰
- 2) 예비 타당성 검토
- 3) 심사(품질부문, 자재부문)
- 4) 승인
- 5) 업체 등록

4.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當社は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日 以上 공개한다.

2) 등록취소 기준

- 품질 및 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當社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尙後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3)부당한 취소의 경우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當社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非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當社가 未발주 또는 未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當社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4)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日 以上の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當社의 귀책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當社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